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78
----------	-------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주철현 · 조인철 · 김문수
김원이 · 양부남 · 안도걸
송옥주 · 권향엽 · 윤준병
박균택 · 조계원 · 전진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는 회원인 91명의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의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기가 4년 단임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수산업협동조합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조합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

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법 개정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45조, 제126조, 제134조, 부칙 제2조 및 제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를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한다.

제126조제1항제3호 중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사업전담대표이사”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두되, 회장이”를 “두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를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의 선출에 관한 특례) 제1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

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같은 해 임기만료에 따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제3조(회장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출된 회장에 대하여는 제13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총회) ① (생 락)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u>구성한</u> <u>다.</u> ③ (생 락)	제36조(총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구성하</u> <u>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u>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이사회) ① (생 락)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u>구성하되, 조합장이 소</u> <u>집한다.</u> ③ ~ ⑦ (생 락)	제45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구성하며, 조합장이 이</u> <u>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 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1. 2. (생 락) 3. <u>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u> <u>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u> <u>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u> <u>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u> <u>이사의 선출 · 해임</u> 4. 5. (생 락) ② (생 락)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u>사업전담대표이사</u> ----- ----- ----- -----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7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 사회를 <u>두되, 회장이 그 의장이</u> <u>된다.</u> ② ~ ⑧ (생 락)	제127조(이사회) ① ----- ----- <u>두며, 회장이 이를 소집</u> <u>하고</u>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u>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u> <u>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u> <u>다.</u> ② ~ ④ (생략) 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 되, <u>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u>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 ⑦ (생략)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u>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u> <u>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되,-----</u> <u>-----.</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u>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u> <u>있으며,-----</u> <u>-----.</u> ⑥ · ⑦ (현행과 같음)
---	--